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486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6.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8. 6. 10 이상근의원 외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6. 1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전문위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삽입. (안 제3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○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 중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위원의 책무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기관인 경상남도 및 인근 일부 시군의 전문위원 책무를 준용 전문위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출 명시함이 옳을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